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1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김영진·백혜련·이학영

강유정 · 김성회 · 김승원

염태영 · 정성호 · 이연희

김준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"특례시"의 경우 행정수요 등 여건이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시, 군, 구에 포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음.

이에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특례 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추진 등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 이고자 함(안 제2조제4호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7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"특별자치시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"을 "특별자치시, 특례시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6호 중 "시·군·구"를 "특례시·시·군·구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"를 "특례 시·시·군·구의 특례시장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"로 한다. 제24조제1항 중 "시·군·구별로"를 "특례시·시·군·구별로"로 한다.

제43조제4항 전단 중 "시·군·구의"를 "특례시·시·군·구의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시·군·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"를 "특례시·시·군·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·도 및 특례시·시·군·구"로 한다.

제45조의 제목 중 "시・군・구의"를 "특례시・시・군・구의"로 하고,

제3항, 제4항 및 제6항 중 "시·군·구"를 각각 "특례시·시·군·구" 로 한다.

제67조제3항 중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을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, "시·군·구"를 "특례시·시·군·구"로 하고, 같은 조제4항 중 "시·군·구"를 "특례시·시·군·구"로 한다.

제86조제1항 중 "시·군·구별로"를 "특례시·시·군·구별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기초생활권"이란 지역 주민	4
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	
자리 및 교육・문화・복지・	
주거・안전・환경 등의 생활	
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	
(특별시, 광역시, <u>특별자치시</u>	<u>특별</u> 자치시,
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	특례시 및 「제주특별자치도
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	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
<u>별법」</u> 제10조제2항에 따른	위한 특별법
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	
호에서 같다) • 군(광역시의	
군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•	
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	
다)가 인근 시·군·구와 협	
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	
다.	
5. ~ 15. (생 략)	5. ~ 15. (현행과 같음)
16. "지방행정체제"란 지방자치	16
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, 지	
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, 특	

별시·광역시·도와 <u>시·군·</u> <u>구</u>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 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.

17. · 18. (생략)

제14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 진) ① 시·도지사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 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 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 한 같다)·구청장(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해당 시·도의 지역 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- 제24조(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·군·구별로 인 구과밀·산업입지·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(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. 이하

<u>특례시·시·</u>
<u>군·구</u>

17. · 18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
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

짓) ① -----

--특례시·시·군·구의 특례 시장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 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 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. 이하 같다)과----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) ① -----

-----<u>특례시·시·군·</u>

같다)하는 경우 행정적·재정 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 략)

제43조(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 저 본방향 등) ① ~ ③ (생 략)

④ 국가는 시·군·구의 인구, 지리적 여건, 생활권·경제권, 발전가능성, 지역의 특수성, 역사적·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하을 받지 아니한다.

⑤ (생략)

제45조(<u>시·군·구의</u> 통합절차) 저 ①·② (생 략)

-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<u>시·군·</u> <u>구</u> 통합방안을 마련하되, 제2항 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안에

,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세43조(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
본방향 등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④ <u>특례시·시·군·구의</u>
<u></u> 특례시·시·군·구의
통합에 관하여는 시·도 및 특
례시·시·군·구
⑤ (현행과 같음)
세45조(<u>특례시·시·군·구의</u> 통
합절차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특례시·시·</u>
<u>군·구</u>
4
<u>특례시·시·군·구</u>

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- ⑤ (생략)
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실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「주민투표법」 제8조제2항·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⑦ (생 략)

- 제67조(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·운영) ①·② (생략)
 - ③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 한 사항의 협의·조정 등을 위 하여 <u>시·군·구</u> 지방시대위원 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·도 지방시대위 원회, 시·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<u>시·군·구</u> 지방시대위원회

⑤ (현행과 같음)
6
<u>특례시·시·군·구</u>
· ⑦ (현행과 같음)
제67조(시•도 지방시대위원회
등의 설치·운영) ①·② (현행
과 같음)
③ 특례시장・시장・군수・구
<u>청장은</u>
<u>특례시·시·군·구</u>
4
<u>특례시·시·군·구</u>